

(토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이후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 용 필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5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삶의 방식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대안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과정의 진통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경제의 사회주의 경제의 동일화와 같은 인식처럼,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견고한 시장자본주의가 뿌리박은 우리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자 경제적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시적 담론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삶의 방식으로 녹아드는 실생활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강조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미 우리사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 농협 등 많은 사회적경제의 조직들과 활동을 접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 이념논쟁과 같은 논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방향과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역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발제문에서 이제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단위 생태계 시스템의 인식이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공동체의 사회적자본과 협력의 가치라는 공동체 운동과 혁신과 비즈니스 시스템의 양대 축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의 수립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의미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첫째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제정 이후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인식확산과 관련 기반구축의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충청남도도 기본법 제정이후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확대, 적극적인 시민참여모색 및 공공기관과의 수평적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시장경제에서 초기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 자립을 통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있어서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민간영역의 자금조달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금을 통한 사회적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금융은 기금의 구축 뿐만 아니라 활용과 운용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영 안정화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셋째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혁신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내의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의 유입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또한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 의해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사회혁신에 의한 사회적경제 확장을 가속할 것이다.

넷째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후 공공인식확산을 위해 관련된 주체들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정책포럼'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된 조직으로 도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인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럼조직은 공공의 인식확산과 지속적인 지역사회기반의 정책개발, 그리고 관련 공공조직의 실무자 및 시민들의 교육활동 같은 저변확산과 인식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이제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시스템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생의 발전구조를 통해 진정한 국민과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제도적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삶의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가 자리잡도록 도의회를 비롯한 주요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